

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2004 연대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문과대학생회, 이과대학생회, 공대학생회, 사회대학생회, 법대학생회, 생과대학생회,  
신과대학생회, 교육대학생회, 상대학생회 비대위,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ysppy.cyworld.com

2004 새터 반성폭력 내규 자료집

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2004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02 | 성폭력이란

04 | 연성추연의 의미



05 |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미

06 | 과/반학생회장들의 한 마디!



09 | 만화로 그린 : 새터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

12 |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전문

18 | 사건의 해결은 이렇게

19 |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



20 |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2차 가해의 심각성

22 | 이런 놀이 다시 생각해 봐요

## 성폭력 이란?

'성폭력'이란 흔히 생각하고 있듯이 '강간'이나 '성추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이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있다

성폭력의 기준이 '거부'의 유무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거부'가 성폭력여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거부를 표시하기 이전의 상태를 '무언의 동의' 상태로 전제하는 것이다. 즉 이는 남성들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이다. 또한 이는 성폭력에 대한 모든 해명과 입증의 책임을 피해자 여성에게 전가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동의'라는 개념 역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뜻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동의가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성폭력을 동의 여부의 문제로 볼 때 여성이 동의나 거부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기존의 불평등한 젠더구조 안에서 여성은 성적인 주체로 자리 잡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동의' 혹은 '거부'의 의사를 여성이 얼마나 밝혔는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구했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 성폭력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파렴치한 가해자와 거기에 재수 없게 걸린 피해자'로 치환되어 버린다. 성폭력은 우리 일상의 성폭력적인 문화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의 도덕성만을 비난하면서 쉽게 자기 자신을 가해자와 분리시켜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되고 용인되기 쉬운 문화 자체를 고민하고, 잘못된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중심주의'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중심주의란 성폭력이나 아니냐의 기준을 피해자의 주관에 따르는 것이다. 나아가 사건 해결의 전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많은 경우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남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것이 성폭력이다 아니냐를 판정해줄 수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험과 느낌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얼마나 가해자 중심의 사회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여자가 먼저 유혹한 것 아니냐, 지나치게 민감하게 그러는 것 아니냐' 등의 비난과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쉽게 이야기되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많은 경우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게 된다. 2차 가해는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가해자 혹은 가해자 주변 인물들이 협박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 외에도 '별 건 아닌 일인데 왜 예민하게 그러느냐', '너가 잘 못한 것은 아니냐', '너의 옷차림이 이상하지 않았느냐'... 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 2차 가해에 포함된다.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얼마나 가해자 중심의 사회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여자가 먼저 유혹한 것 아니냐, 지나치게 민감하게 그러는 것 아니냐' 등의 비난과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쉽게 이야기되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다.

##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의 의미

연성뿌연의 활동은 2000년 반(反) 성폭력 학칙과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는데 이것은 연세대학교 내 최초의 공통된 성폭력 규정을 갖게 한 것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성폭력**이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하며, 분명한 성별 권력관계 하에서 발생한다.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에 대한 성찰 없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 일상 곳곳에 만연해 있으며, 따라서 대학 사회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서조차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 게임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선후배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제간의 관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학교에는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은 성폭력을 문제시하고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결성된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이하 연성뿌연)"라는 학생 연대체가 존재한다. 연성뿌연은 성폭력 문제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를 비롯 각 단대에서 성폭력을 고민하는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활동하고 있다. 연성뿌연의 활동은 2000년 반(反) 성폭력 학칙과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는데, 이것은 연세대학교 내 최초의 공통된 성폭력 규정을 갖게 한 것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2000년부터 계속된 연성뿌연은 2004년 올 해 역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과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시작으로 2004년 연세 반성폭력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학의 자유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새내기들에게 그리고 성폭력에 대해 무감했던 재학생들에게 연성뿌연의 활동은 성폭력 문제를 재고하게 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각 단대의 반성폭력 주체들이 연성뿌연 테이블을 통해 활동을 펼치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지지하는 것이, 연성뿌연 활동에 더욱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성폭력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연세대학교 학생 모두가 진정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는 신입생들이 대학문화를 처음으로 접하고, 대학생활을 함께 할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게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터는 새내기들의 4년간 대학생활, 동기 및 선배 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터에서 새내기들은 '성폭력'을 가장 먼저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처음 만나는 선배와 후배의 어색함과 남학우와 여학우의 어색함(남고와 여고가 아직도 많은 실정에서)을 없애고 서로 빨리 '친해져야 한다'는 명분 아래 성폭력이 쉽게 발생하고 있다. 서로를 알고 친해지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술자리나 게임들이 이미 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이 단지 물리적 강제를 사용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 사회와 결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기에 이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문화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2000년에 제정이 되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불쾌감과 피해를 드러낼 수 없는(처음부터 '찍히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새내기들이 내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문제제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나아가 성폭력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하고, 여학우를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문화-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인-를 함께 바꾸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기 이전, 학내에서는 처벌이 중심이 되는 학칙과는 달리 보다 근본적으로 대학 내에서 성폭력 사건의 발생을 조장하는 문화적 토양 자체를 바꾸어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해낼 수 있도록 하는 자치규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제정되었다. 학생사회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성폭력 담론의 형성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치적인 해결에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학생사회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학생 자치권을 구현해나가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새터 반성폭력내규의 의미

보다 근본적으로 대학 내에서 성폭력 사건의 발생을 조장하는 문화적 토양 자체를 바꾸어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해낼 수 있도록 하는 자치규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제정되었다.

## 과/반 회장들의 한 마디!



말글이 으뜸이 인문 1반 회장 조성호\_여남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요!  
날날2반 새내기 맞이 기획단 윤여진\_양성평등의 바람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영문 인문 3반 회장 하종찬\_‘성폭력’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화이팅~  
독4반 부회장 이성호\_연성루언이 양성을 자유케 하리라  
불꽃5반 회장 이석호\_여남이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봐요~  
인문 다울 6반 회장 김경진\_더불어 함께하는 연세인이 됩시다.  
사고7반 03학번 대표 유희곤\_우리 학교 성폭력을 뿌리 뽑읍시다!!  
철8반 회장 성영준\_양성이 평등해지는 날까지 열심히 해 나가요~  
비상 9반 회장 김성민\_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듭시다.  
쏘시오 열열이 회장 장영현\_양성모두의 진정 자유로운 학교 생활을!!  
싸이코 11반 새내기 맞이 기획단장 김병철\_연성루언은 연대생 모두와 함께할 것입니다.  
문과대 부회장 김지현\_연성루언, 결코 당신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과대 회장 이희영\_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 알찬 연성루언을 만듭니다.^^

### 문과대

### 사회대

피차일반(1반) 03 반대표 조규진\_반성폭력 내규,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품생품사(4반) 03 반대표 이윤경\_무심코 지나치던 그 순간이, 당신을, 여성을 세상에서 소외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단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강오반(5반) 학생회장 조은혜\_여남평등의 그날까지! 모두 함께 합시다! 아자!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조승중\_어쩌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그러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지요, 항상 염두에 두세요,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수도, 피해자가 될수도.  
사회대 학생회장 김원철\_반성폭력 내규,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입니다

### 이과대

이과대 수학과자과1반 대표 여흥기\_“성폭력이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화이팅!!”  
이과대 화학&자과2반 학생회장 신동한\_“내규! 연성루언! 성폭력을 뿌리 뽑는 시작입니다”  
이과대 Geo&3 부학생회장 조우신\_“새터내규 모두모두 잘 지켜서 새터 잘 보낸시다~~”  
이과대 천기4반 회장 안기범\_“즐거운 새터! 내규와 함께~~”  
이과대 생물,생화학 자과5반 대표 현원석\_“내규~!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맙시다~!”  
이과대 물리&자과6반 대표 이우주\_“반성폭력 내규! 꼭 지킵시다~”  
이과대 의예과 과회장 김명구\_“쟁난 새터를 위해서 내규를 잘 지켜요.”  
이과대 치의예과 회장 임정환\_“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작은 규칙”  
이과대 학생회 반성폭력주체 손영현\_“연성루언 화이팅!! 새터내규 잘 지켜Boa요!!”  
이과대 학생회장 박기일\_“성폭력을 뿌리뽑아버려요!”  
이과대 부학생회장 종순철\_“연성루언 수고하십니다!!”

### 생과대

아동가족과 과대표님 김정민\_철수를 순이 대하듯, 순이를 철수 대하듯!  
식품영양학과 과대표님 김주영\_남녀모두가 똑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래요  
주거환경학과 과대표님 김기만\_여성,남성...그 전에 인격을 가진 동등한 인간임을 잊지않길.  
생활디자인 과대표님 김혜성\_양성평등, 화이팅입니다!!  
의류환경학과 과대표님 김유미\_남녀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에는 도전하는 신념을 갖자.

### 법대

법과대학 1반 반학생회장 고윤현\_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법과대학 2반 반학생회장 신경하\_최소한의 보험, 안전망 -> 새터내규.. 더욱 더 즐거운 새터를 만들어가요~  
법과대학 3반 반학생회장 윤지영\_내규 보고 뭐라 마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실걸요!?  
법과대학 4반 반학생회장 배준호\_연성루언 수고하시네요~ 내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법과대학 5반 반학생회장 강석일\_It's precious...  
법과대학 6반 반학생회장 전민재\_앞서가는 연세인이라면 꼭 지켜져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파이팅!!

과/반 회장들의  
한 마디!

## 공대

공학1반 박준수 '즐거운 연세 양성이 함께하는 연세!  
공학 2반 이용윤 '양성이 평등한 연세를 만듭시다~'  
공학 3반 박형준 '모든 사람의 작은 관심이 이 땅에서 성차별을 사라지게 합니다.'  
공학 4반 부회장 함동우 '여남이 함께하는 즐거운 대학 생활을 만들어요'  
공학 5반 송영규 '성폭력 없는 연세를 만듭시다!!  
6반 김성수 '멋진 대학생 되세요!  
공학 7반 강영규 '연성투연! 성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Fighting!  
8반 김교현 '성폭력 없는 연세! 진정한 연세!  
9반 황승계 '양성평등한 대학문화를 함께 이루어가요.'  
10반 백호정 '너와 나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터가 됩시다!  
11반 김주삼 '내가 먼저 실천하면 모두가 행복하겠죠?'  
12반 류승민 '자신의 기준만이 옳은 건 아닙니다~'  
회장 령 '양성평등한 연세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회장 '우리 학우 모두를 위해 만든 우리의 규칙입니다.

## 교육대

교육대 학생회장 심춘화 '성폭력 없는 연세,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양성평등의 그 날까지!!

## 신과대

신과대언론동아리 '남자도 인간이다! 여자도 인간이다!  
현대시각문화연구회 '여성우월도 남성우월도 아닌 남녀평등을 이룩시다  
알파와 오메가 '여성의 힘을 보여주세요!  
연세신학학술연구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를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화이팅!

만화로 그린 : 새터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

#01



에피소드#1 남성의 신체에는 요구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왜 여성에게만 요구될까 유독 여성의 신체는 사회의 시선에 의해 많은 제약을 겪게 된다. 이것은 여성을 하나의 인격이 아닌 단지 '보이는 대상-보기에 좋거나 싫은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별화된 사회는 여성을 '성애화된 대상'으로 고정시켜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자신의 커드라이터 털을 미느나 마느나는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여성은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항당하지 않은가?) 이 상황 자체가 성별에 따른 억압일뿐더러, 더구나 그 '제약'에 위반되는 여성을 비하함으로써 웃음거리로 삼는 상황극이 새터 장기자랑 무대에 올려졌을 때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상황극에서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

#02



# #03



에피소드#3 '물 좋은 조'는 공동체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이 그 공동체에 속한 여성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이라는 사실, 여성의 외모를 공동체의 '얼굴'로 내세우려는 태도, 이 역시 여성을 단지 보이는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사선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 #04



에피소드#5 특정 성이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 문화를 위해 성차에 기반한 폭력적인 경험이 없는 대학생활을 위해 반성폭력 새터 내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 새터 내규의 의미도 알기 전에, 내규를 희화화하거나 단지 귀찮은 존재로 취급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곧 나로 인해 배제당하고 억압받는 이가 없는지 스스로를 성찰하기를 계율이 하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 #05



에피소드#5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은 상대에게 성적인 불쾌감-위협을 준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상식화된 듯하다. 그러나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제기는 결코 쉽지 않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화기애애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는 것으로 취급되며, 문제제기하는 이는 유별나고 분위기를 깨는 애로 딱하게 된다. '공동체의 분위기'를 위해 그런 정도는 덮어두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그 공동체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은 무시한다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이다. 좀 전의 상황에서는 여성의 외모를 공동체의 '얼굴'로 내세우려 하더니, 여성이 겪는 폭력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침묵하기를 강요하는 공동체. 대체 그 공동체는 누구를 위한 공동체란 말인가.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지원 옹호, 혹은 문제제기 자체를 먹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2차 가해가 된다.



새터반성폭력

# 새터 반성폭력

## 내규

※ 이 내규의 적용 시기는 학교와 학생회가 정한 O.T. 기간부터 각 단대의 신입생 수련회의 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로 한다.



### 1. 목적

새터는 신입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자리이다. 신입생들이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맨 처음 참여하는 자리가 바로 새터이기 때문이다. 새터에서 신입생들은 그전까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대학이라는 공간을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으로 자각하게 된다. 또한 신입생들은 새터를 통해 대학이 가진 문화와 분위기에 대해 인식하게 되며, 재학 생활 동안 지속될 인간 관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렇듯 새터의 중요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새터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신입생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터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구체적 내규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그저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새터 내규는 한 성에 의해 다른 성이 배제되는 현실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인 동시에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촉구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새터 참가자 및 진행자들은 내규에 대한 사전 교양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하며 치열하고 지속적인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이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 관념을 지적해 내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학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 1) 술자리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에 앉게 하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언어나 행위

예) "야, 여자 후배들 좀 사이사이에 앉혀봐"

- 술을 마실 때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예)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한 성을 임의로 배제시키려는 경우



#### 2) 전체 행사 및 공연 자리

- 새터 행사에서 사회자가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언행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행위, 성기 등을 흉내내는 경우

예) 조별로 촌극이나 장기자랑을 할 때

※ 99년 새터에서 모단대의 조별 촌극 시간에 '학교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남자가 불을 꺼놓고 '오빠,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등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과 산음소리로 표현했다.

예) 98년도 응원 오리엔테이션 때 아카라카 응원단 중 여학우가 빨간 옷을 입고 여자 고대를 상징한다며 '벗어라'고 외침

예) 00년도 모 동아리에서 남학생들을 왜곡된 여성의 모습으로 여장하게 하여서 심사하고, 성적인 놀이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다.

예) 00년도 모단대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연극을 하였다.

#### 3) 생활 공간

- 공동의 공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구,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예) 01년도 모 동아리에서 여자 연예인의 브로마이드를 붙여 놓고 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였다.

- 새터에서 방이름을 정하고 그 게시물을 꾸밀 때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 공공장소나 여럿이 쓰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 고정된 성 역할에 의해 일의 분업이 강요되는 경우  
예) 식사 준비나 방 청소를 할 때 여성만의 일이라고 여기거나 강요하는 경우

#### 4) 놀이 자리

- 신체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놀이를 하는 경우  
예) 00년도 모단대 새터에서 여왕벌 게임을 하였다.

예) 02년도 모단대에서 다른 단대의 여학생 머리카락을 뽑고 립마크를 찍어오는 게임을 하였다.

예) 02년도 모단대에서 무릎 앉기 게임을 하였다.  
-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예) 02년도 한 단대 새터에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력가'를 부른 사건이 있었다. '젖소부인 엘리제' 등

-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

예) 00년도 모 단대 새터에서 '포르노' 영화 제목 맞추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예) 00년도 모 단대 오티 장소에서 아카라카 섹스 버전을 외치는 사건이 있었음.



예) 00년도 모 단대 새터 때 '첫날밤에' 등의 게임이 이루어졌다.

#### 5)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입맞춤, 포옹)

예) 98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웃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손이나 신체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동작을 하는 경우

-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모든 행위

#### 6)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 등을 주제로 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농담을 하는 경우

예) '열 달 동안 배부르게 해줄까?' 등의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을 하였을 경우

예) '애 잘 날게 생겼군', '고속도로, 개란후라이, 건포도, 질벽, 젖소', '얼굴 값 한다' 등의 표현과 같이 특정 신체를 묘사하는 말

- 고정된 성역할에 기반하여 언어폭력을 가하는 경우

예) 남성에 대해 - '기생 오라비 같다', '남자가 왜 그렇게 출썩거리냐?', '남자가 그런 일도 못하냐?',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등

여성에게 대해 - '여자가 그런 것도 못하냐', '여자가 힘이 세다', '여자가 너무 나쁘다', '넌 꾸밀 줄도 모르냐' 등

- 한 성을 일방적으로 비하하고 배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예)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한다', '여자와 복어는 사울도리로 때려야 한다', '여자는 그냥 두면 기어오른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삼종지도', '칠거지악', '여자가 제법인데', '여자는 순종이 미덕이다', '여자가 너무 나쁘다' 등의 표현

#### 7) 적대적 환경 조성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예) 일부러 휘파람, 교성, 침을 삼키는 소리 등 소리를 냄으로서 불쾌감을 주는 경우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쪽지나 편지,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낄 상황을 조성

예) 벽으로 돌아붙여 팔에 가둔다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 다른 성의 화장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행위

예) 01년도 모 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당함

#### 8) 사이버 공간

- 각 과/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예) 커뮤니티 자료실에 포르노를 올린다거나, 게시판에 성폭력적인 글을 올리는 경우

### 3. 2차 가해에 관한 규정

1)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지만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 성폭력 사건을 듣고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경우

예) 01년도 모 단대 새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반대 표가 '별 일 아니다'라고 반응하고 은폐시키려 하였다.

예) '별 거 아닌 일가지고 크게 만들지 말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

- 가해자 주변에서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예) 02년도 모 단대 새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의 친구가 '나도 같이 있었는데 절대 그런 적 없다',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2)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경우 동조자를 2차 가해자로 규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단, 이때의 2

차 가해자는 새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 4. 대상

새터에 참여하는 모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 5. 의무

- 새터에 참여한 모든 학내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새터를 준비하는 각 학생회들은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교양을 받아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새터에 참여하는 학생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새터 내규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새터 기간에 발행하는 새터 자료집에 내규 전문과 내규 소개 글을 실거나 새터 내규를 위한 모임에서 제작한 내규에 관련된 자료집과 포스터를 배포하여야 한다.

- 각 단대 학생회는 새터 장소에 성폭력 신고함을 만들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각 학생회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새터를 준비하는 주체로서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과문을 학내 공간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6. 신고와 신고기구

-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제3자가 과/반학생회, 단대학생회, 총여학생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지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사건은 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 사건 신고는 새터 기간뿐만 아니라 새터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가능하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신고와 관련된 시효 규정은 없다.

## 7. 피해자의 보호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냈을 경우, 성폭력 사실과는 상관없는 피해자의 용모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됨으로 해서 또 다른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 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반 학생회, 단대

학생회,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 동아리연합회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이 신고된 경우 구성되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단대 학생회나 과반 학생회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나 동아리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 총여학생회를 대표하는 1인
  -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1인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 (최소3인, 최대6인)

-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집행부는 가해자 처벌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의 단대에서 구성하며,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는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3)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의 처벌을 강제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4)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위원직을 박탈한다.

- 5) 대책위 위원에 공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석이 된 대책위원의 소속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책위에 들어와야 한다.

## 10. 대책위원회의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

### 1) 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

- ①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② 공식적인 실명사과(피해자 및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를 받아내야 하고 그것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 ③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 ④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게 가한다.

###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보호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징계 및 재교육
-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
-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11. 가해 행위 및 2차 가해에 대한 징계내용

- 1)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해자 및 2차 가해자를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재교육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 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 2)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사항의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학내 지정한 장소에 공개해야 한다.

## 12.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정 : 2000. 2. 9

1차 개정 : 2003. 1. 28

개정된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는 2003년 2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는 모든  
성폭력  
안타깝다

# 01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일반적으로 'XX 비상대책위원회(준)'-을 꾸린다. 주로 학생회가 될 수 있겠지만, 학생회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것보다는 담당하는 주체 한 명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속이 다르다면 각 소속 학생회에서 각각 한 사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 정도로 꾸리는 것이 좋다. 이 때 가해자가 속한 학생회에서 대책위에 참여하는 것은 가해자를 두둔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속한 공동체로서 책임을 사건 해결에서 그 후속작업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사건의 해결은

이렇게



# 03

과/반 학생회에서 나름대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처리 과정을 단대 학생회로 보고하도록 하자. 그래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대 학생회도 마찬가지다. 이는 새터내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경험의 축적과 이후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 02

한편 과/반 학생회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의 경우 사실 그 피해자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기는 쉽지 않다. 그런 경우라도 학우들과 함께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그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의 가해가 이루어지기 쉽다.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 역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 가능하다.

# 04

사건 해결을 할 때 피해자의 의지와 의사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올바른 사건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해줘야 하고, 최대한 사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신고하고 나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공식적으로 대책위를 세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공식적 해결은 공개적 해결과는 다르다)은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절대 사건을 확대하는 방법이 아니다- 사건이 묻혀지거나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다른 가해를 할 가능성을 최소로 줄이고, 뒷소문만 무성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 피해자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1. 성폭력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 1) 흥겹게 놀아야 하는 분위기를 자신이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 2) 성폭력은 대부분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가 어색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 3) 새내기나 선배에게 성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새터 시기 처음 만난 선배에게 문제제기가 힘들기 때문에 - 새터 때 새내기들의 대부분은 선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

2.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기도 한다.

'혹시 내 옷차림이나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 것이 아닐까', '왜 그 때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등-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일뿐이다. 성폭력이 일어난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없다.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성폭력이 피해자의 탓이 절대 아님을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피해자를 비난하기보다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를 멀리하고 싶어하고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선배나 동기가 사건을 알게 되고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를 다그치지 않아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피해자이다. '그런 일은 별 거 아니지 않아?', '뭘 신고까지 하니?' 등의 이야기는 피해자의 경험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한다.

4. 사건이 신고되면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를 신뢰한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5.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며 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가능한 선택지들을 이야기해준다.



##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2차 가해의 심각성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는 흔히 2차 피해를 받게 됩니다. 2차 가해 혹은 2차 피해? 무언가 생소하거나 뜻이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테지만, 사실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언행들, 심지어는 피해자에 대한 호의나 안타까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내뱉는 말들이 피해자에게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또 하나의 성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폭력 사건에 뒤따르는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경험을 부정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을 정당화하고 무마시키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과 자신의 피해경험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인제공자" 내지는 "다들 즐거운데 혼자 예민한 사람"으로 매도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지가 결여된 채 이와 같은 2차 가해가 반복될 경우 성폭력은 결국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고착화된 상태로 자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한편으로 2차 가해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경우

성폭력 사실에 대해 지적을 받았을 때 가해자는 흔히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혹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지만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주변인들 역시 "그렇게 (가해자의 행동이 성폭력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라든가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로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할 피해자 중심주의를 무시하고 성폭력 사건을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둔갑시키는 행위로서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해석을 신뢰하지 않고 가해자의 말에 일방적인 객관성을 실어주는 행위들은 피해자의 고통과 후유증을 배가시킨 채 가해자에게 반성 없는 면책의 기회만을 줄 뿐입니다. 2차 가해 행위를 통해 가해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동안 피해자의 권리와 입장은 완전히 증발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되풀이될 시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할 기회와 입지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지요.



###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입막음하는 경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사소한 일을 가지고 크게 만들지 말아라"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고통을 덮어두는 동시에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둘(가해자와 피해자)이 화해하고 좋게 끝내자"라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위에서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역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별화된 권력관계에 의해 피해자가 되기 쉬운 위치에 놓인 사람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임을 상기할 때, 이같이 성폭력 사실에 문제제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 중심적인 공동체 문화의 즐거움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반증할 뿐입니다. 피해 경험을 말하는 피해자는 결코 피해자를 배제한 채, 또는 한쪽 성(性)이 겪는 부당함을 배제한 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해자와 공동체 문화의 안위에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분위기를 북돋는다는 목적 아래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 역시 2차 가해에 해당되게 됩니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폭력 사건을 유포/공개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노출시키는 경우

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용기가 따라야 하는 일입니다. 성폭력 사실을 알리게 되었을 때 자신에 대한 지지보다는 손가락질과 악의적인 소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자기 검열("내가 좀더 싫다고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 "내가 충분히 거부의 표시를 하였는가?")을 통해 가지게 되는 죄책감 등이 피해자 스스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도록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입소문을 통해 사건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가 원치않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을 지속적으로 상기함으로써 고통을 새로이 겪어야 함은 물론 가해자에게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공동체 속에서 쉽게 노출되어 사생활 자체를 지속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폭력 사실과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될 때,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해자 중심적인, 또는 다른 왜곡된 방식의 사건 해석을 받아들이고도 침묵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에 대한 동정과 호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 자체에 대해 제3자와 논의하거나 사건을 알리는 일은 피해자에게 궁극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심각성을 논하면서 혹시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차 가해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는 어떠한 말도 차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2차, 3차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함으로써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통을 부정하고 가해자의 입장에 손을 들어줄에 따라 성폭력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경험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의 위치에 함께 서서 지지하는 발언이 중요합니다. 또한 별다른 고민 없이 사소하게 행해진 언행이 성폭력 피해자의 삶 자체를 침범하고 보다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런 놀이 다시 생각해 봅시다

### FM

‘안녕하십니까~’ ‘어이~!’ ‘통일연세~’ ‘어이~!’  
목소리에 온갖 기합과 악을 다 모아 큰 소리로 선배들이 시범을 보인다. 그런 데.. 가만 이젠 어디서 많이 들던 어조와 목청이 아닌가. 그리고 보니 <우정의 무대> 따위에서 군입들이 자기소개와 별것 아닌 대답 한마디를 하면서도 온갖 기합이 들어간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하던 것이 생각난다. 그 광경을 보며 왜 저러나 싶을 우습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저걸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허.. 그런데 내가 지목되었다. 난 크고 굵은 목소리 잘 못내는데, 어쨌든 이게 대학에서 노는 방법인 것 같으니 해야 할 것 같긴한데...

‘안녕하십니까..’

‘에이~ 목소리가 작다~’

‘안녕하십니까..’

‘에이~ 이번 판은 나가랍니다아~’

‘다시해봐 목소리 크게~’

‘저.. 못하겠는데요..’

‘...(순간 정적, 싸해지는 분위기)..’

‘아, 뭐 그래. 강요하면 안되지. 넌 들어가고, 다음○○ 나와서 해봐요’

이게 뭐람.. 지금 불러간 저 남자애는, 껍도 씩씩하게 잘 한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건가? ... 뭔가 난 초라해진 기분이다..

OT와 새터, 대학문화를 접하기 위한 통과례와도 같이 인식되는 이곳에서 신입생들은 처음 ‘대학문화’라는 것을 접하게 된다.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FM!

FM앞에서 여학생들이 머뭇거리는 이유 중 큰 부분은 ‘분위기를 살려줄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사회화 과정은 온유한 여성성/진취적인 남성성이라는 기존의 성별화된 역할에 맞춰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진행된다. 그러니 이런 사회화 과정을 거친 여성이 ‘큰 목소리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여학생에게 FM은 자신이 즐길 수 없는, 불편한 놀이가 될 수밖에



여학생에게 FM은 자신이 즐길 수 없는, 불편한 놀이가 될 수밖에 없는 성별화된 사회 질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에 없는 성별화된 사회 질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요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없는 놀이가 공동체의 중요한 놀이문화가 되어 있을 때, ‘불편한 사람은 안해도 돼.’라는 말은 배려가 아닌 배제가 될 수 있다. 위의 상황처럼, FM이 불편한 누군가는 FM을 해도 불편하고, 안하면 소외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놀이문화는 구성원 모두가 즐겁기 위한 것이다. 그 놀이가 구성원 중 누군가를 소외시킬 때, 이 놀이를 계속해도 좋은지, 되물어 봐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그 놀이문화가 특정 성에게 불편한 것일 때, 대학 공동체는 기성 사회의 성차별을 반복, 답습하고 있게 된다. FM을 다시 생각해 보자. 성별 위계화된 사회에서 여/남이 겪게 되는 서로 다른 사회화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것을 비껴가거나 극복해가는 놀이를 모색하자.

### 맞조맨?

OT때 용원을 배웠다. 앞으로 새터나 뒷풀이 자리, 축제에서 이 응원곡들이 계속 쓰인다고 하니 열심히 배웠다.. 그런데 응원곡 중에 이런 게 있네?

‘휘날리는 머리 맞조 맨조맨 /떡 벌어진 어깨 맞조 맨조맨/맞조 맨조맨 신촌에 나타난 맞조맨/맞조 맨조맨/우리들의 친구 맞조 맨조맨’

작년까지 이 응원가의 제목은 ‘마쵸맨’이었다고 하던데.. 마쵸맨? 이걸 대체 뭐람.. — 그리고 왜 올해부터는 ‘맞조맨’이 된걸까? 그리고 가만 보면 이 노래의 가사와 맞조맨은 뭔가 안 맞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아하, 맞조 대신 마쵸가 들어가면 의미가 딱이긴 하군.

작년까지 ‘맞조맨’은 ‘마쵸맨’이라는 응원가로 불려졌었다. 마쵸맨이라는 노래는 웃고 떠들며 즐기 위한, 단순한 응원가라고만 볼 수 없다. 재미있거나 그저 응원가 중 하나라는 이유로 학기 초부터 생각 없이 불려지는 마쵸맨은, ‘강함-정력’이 긍정적이며 꼭 필요한 남성의 가치라는 고정적이며 위계적인 성역할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니 ‘그 마쵸맨’을 우리들의 친구로 명명하며 신나게 부르는 대목에서는 ‘강한 남성, 남성다운 남성’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연세인들이 스스로를 배제

시키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마쵸맨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기백있고 능률한 남성다움을 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폭력적인 언어로 여성을 비하하는 여성 차별주의자나 남성우월주의자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맥락을 생각할 때, 신나는 곡에 맞춰 '우리들의 친구, 마쵸맨' 이 공식적인 응원가로 불려지는 데에 여성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마쵸맨이라는 응원가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여학생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아카라가 행사 도중 마쵸맨을 부를 때는 자리에 앉기, 호루라기 불기 등으로 응원단에 항의를 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이 응원곡에 불쾌감을 느낀 여학생이 응원단에 항의, 마쵸맨을 응원가로 부르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반성폭력 학칙에 따라 공식적인 신고를 했다. 응원단은 이 항의에 대해 '마쵸맨'이라는 응원곡은 쉽고 경쾌한 음, 품 등과 학생들의 합성을 잘 유도할 수 있는 곡이며 응원의 흐름이 쳐질 때(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흐름의 반전과 학생 참여로 유도하기 위한 몇 곡 안되는 곡 중(A급 곡 중) 하나이고 이 응원곡을 죽이기에는 아직까지 응원곡 여유가 없다고 판단 한다는 입장을 표했고 결국 '마쵸맨 사건'은 응원곡은 그대로 두되, 가사를 개사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 응원단에서 발표한 개사 내용이었다. 가사 전문은 그대로 두되, 단지 '마쵸맨'을 '맞쵸맨'으로 바꾼 가사를 발표한 것이다. 응원단은 학생들의 무수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마쵸맨'이라는 응원곡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단지 형식적인-기만적인 개사로 항의를 미봉한 것이다. 그러니 당장 이번 새터에서, 오테에서, 술자리 뒷풀이에서, 축제에서 이 '웃긴' '맞쵸맨'을 부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재미있다거나 그저 응원가 중 하나라는 이유로 학기 초부터 생각 없이 불려지는 마쵸맨은, 강함, 정력, 이 긍정적이며 꼭 필요한 남성의 가치라는 고정적이며 위계적인 성역할을 그대로 담고 있다.